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11. 2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55호로 2013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영등포구 의회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① 【신길동 특성화도서관 신축】

신길11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부채납 예정인 도서관 부지를 토지 기부 채납 전 부지 사용허가를 받아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여, 개성 있고 특성화된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지식·문화 욕구 충족과 양질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당산1동은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비율이 18.4%로 낮고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1,787명이나 되어 국공립어린이집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동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부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함으로써 우리 구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③ 【당산2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당산2동은 수급률이 70.1%로 서울시 평균수급률(101.4%)보다 낮은 지역이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함. 당산2동의 일반 주택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④ 【양평2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양평2동은 수급률이 73.1%로 서울시 평균수급률(101.4%)보다 낮은 지역이며 보육수요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비율도 9%로 서울시 평균(22.1%)에 미치지 못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함. 양평2동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재산

① 신길동 특성화도서관 신축

○ 지상5층, 지하2층 도서관 신축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백만원)	취득시기	취득 사유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m ²)				
대지	신길동 252-11일대 (신길11재정비축진구역 내 도서관 부지)	토지 : 2300.3 (기부채납 예정) 건물 : 8,140	22,362	2017년 1월 개관(예정)	도서관 건립을 위한 신축	토지 기부채납 전 부지 사용허가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 지상3층 어린이집(옥상 활용 녹지 공간 조성 및 놀이터 설치)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백만원)	취득시기	취득 사유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m ²)				
대지	당산동3가 560번지	토지 : 8,730.5 건물 : 750	2,003	2014년 ~ 2015년	국공립어린이 집 신축	토지는 영등포구청에서 별도 매입 (2014.2.예정) 건물 신축

③ 당산2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 지상3층 어린이집(옥상 활용 녹지 공간 조성 및 놀이터 설치)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백만원)	취득시기	취득 사유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m ²)				
대지	당산동4가 1-165 당산동4가 1-166	토지 : 267.5 건물 : 300	2,187	2014년 ~ 2015년	국공립어린이 집 신축	

④ 양평2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 지상3층 어린이집(옥상 활용 녹지 공간 조성 및 놀이터 설치)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백만원)	취득시기	취득 사유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m ²)				
대지	양평동6가 51	토지 : 172.9 건물 : 300	1,672	2014년 ~ 2015년	국공립어린이 집 신축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신길동 특성화도서관은 신길동 252-11번지 일대 신길11

재정비축진구역 내 기부채납 예정인 도서관 부지에 연면적 8,140 m^2 (지하1층/지상5층)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공사비 190억 5,852만원, 설계용역비 10억 757만원, 감리비 12억 3,108만원, 시설부대비 4,485만원, 스마트시스템 구축비 10억원 등 총 223억 6,202만원이며, 재원 구성별로는 국비 81억 7,100만원, 시비 8억 9,800만원, 구비 132억 9,302만원임.

우리구에는 현재 1) 국립도서관 1관, 교육청도서관 1관, 구립도서관 3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구립도서관은 서울시 자치구별 평균인 4개소에 1개소가 부족한 실정이나 2014년 2월중 여의도 디지털 도서관이 개관 예정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당산동3가 560번지에 연면적 750 m^2 (지상3층)의 신규 신축으로 정원은 150명이며, 사업비는 공사비 18억 8,300만원, 설계비 9,500만원, 감리비 2,500만원 등 총 20억 300만원이며, 재원 구성별로는 시비 16억 200만원, 구비 4억 100만원이며,
당산2동 국공립어린이집은 당산동4가 1-165 외 1에 연면적 300 m^2 (지상3층)의 신규 신축으로 정원은 70명이며,

1) - 국립도서관 : 국회도서관, - 교육청도서관 : 영등포평생학습관
- 구립도서관 : 선유정보문화도서관, 문래정보문화도서관,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3억 3,700만원, 공사비 7억 8,900만원, 설계비 5,137만원, 감리비 963만원 등 총 21억 8,700만원이며, 재원 구성별로는 시비 17억 5,000만원, 구비 4억 3,700만원이며,

양평2동 국공립어린이집은 양평동6가 51번지에 연면적 300 m^2 (지상3층)의 신규 신축으로 정원은 70명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8억 2,200만원, 공사비 7억 8,900만원, 설계비 5,137만원, 감리비 963만원 등 총 16억 7,200만원이며, 재원 구성별로는 시비 13억 3,800만원, 구비 3억 3,400만원임.

2013년 11월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은 6,733개소이며, 이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749개소로 1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전체 261개소 중 국·공립 어린이집 24개소로 9.2%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시 평균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며, 특히 입소 대기자가 총 1,787명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 **검토결과** 개성있고 특성화된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다양한 지식·문화 욕구 충족과 양질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들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다만, 상기 관리대상 사업별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 특성화도서관 신축 예산은 건립자문단 운영 및 업무추진 등으로 총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예산은 3개소 총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우리구 「2013 ~ 2017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따른 2014년도 소요예산액인 11억 5,100만원의 26%만 반영한 것이며,
- 또한 신길동 특성화도서관은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국비 미확보 시 구비로 추진” 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통보되었고, 국공립어린이집은 2012년 부터 추진중인 여의도 복지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2014년도 소요예산²⁾ 66억 4,569만원 중 3억원만 금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구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방안 등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대책 마련을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2013 ~ 2017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소요액임.

참 고 자 료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익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 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